

코스닥市場 健全化를 위한 發展方案

99.12.20

**財 政 經 濟 部
金 融 監 督 委 員 會**

I 코스닥시장의 현황

□ 코스닥시장은 99년들어 급격한 성장세 시현

- 일일 거래대금 : 55억원('98평균) → 1.8조원('99.12.1 ~ 12.10평균)
 - * 거래소시장의 0.8%수준 → 38%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거래소시장의 98년중 일평균거래대금(0.6조원)을 크게 상회
- 주가지수 : 75.18p('98말) → 261.37p('99.12.10)
- 시가총액 : 7.9조원('98말) → 62조원('99.12.10)

□ 주요 성장요인

① 코스닥법인의 반기실적이 대폭 호전

- 99년 반기결산 결과 영업수지 대폭 개선(△7,369억원→9,069억원)
- 부채비율이 대폭 감소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

* 코스닥법인의 반기실적

구 분	코스닥법인	상장법인(제조업기준)
매출액 순이익률	7.95	2.70
부채비율	182.2%	207.7%

② 벤처기업중심의 유사종목시장인 미 나스닥시장의 강세

* Nasdaq 및 뉴욕증권거래소 주가추이

구 분	Nasdaq	Dow
99.10.1	2736.9p	10273.0p
최근(99.12.10)	3620.2p	11224.7p
상승율	32.3%	9.3%

③ 고수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투자자의 코스닥시장참여 증대

- 11월이후 거래소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도 코스닥지수는 상승하는 등 양 시장의 차별화 현상이 나타남

④ 1~8월까지 순매도를 기록하던 외국인투자자가 9월이후 순매수로 전환(99.9 ~ 12.10까지 4,289억원 순매수)

Ⅱ 코스닥시장 건전화를 위한 발전방안

< 기 본 방 향 >

- ◇ 뉴밀레니엄 시대를 선도할 지식기반산업의 증추가 되는 중소.벤처기업의 자금원으로 코스닥시장을 지속적으로 성장. 발전시켜 나갈 필요
 - 성장산업위주의 증권거래소와는 차별화된 중소.벤처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그 특성을 유지.발전
- ◇ 코스닥시장의 양적인 성장에 상응하게 제도.운영에 대한 질적인 개선을 기함으로써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기능을 강화
 - ① 시장진입은 “건전한” 중소.벤처기업이 위주가 되고 부실화한 기업은 퇴출하는 등 등록 및 퇴출제도의 개선
 - ② 시장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불공정 거래의 소지를 제거하고 감시기능도 대폭 강화
 - ③ 코스닥시장의 등록심사기구인 코스닥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, 코스닥시장 관련기관간 업무조정을 통하여 합리적 운영체제 마련
 - ④ 거래 활성화에 맞추어 전산시스템 확충등 Infra를 보완

1. 건전한 기업위주의 시장조성을 위한 등록제도의 개선

가. 등록요건 개선

□ 벤처금융이 투자하여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은 투자후 일정 기간(예 : 1년)이 경과한 경우에만 완화된 등록요건 적용

○ 현재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주식분산요건만(총 주식수의 20% 이상) 충족하면 등록이 허용되고 있음

* 현행 벤처기업기준(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)

- ①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금융이 당해기업 주식의 10% 이상 출자
- ② R&D 투자비율이 총매출액의 5%이상
- ③ 특허기술을 이용한 매출이 총매출의 50%(또는 수출액의 25%)이상
- ④ 벤처기업평가기관(중소기업진흥공단등)에서 인정받은 우수기술기업

□ 코스닥등록시 **주식분산비율요건 확대** (2000.4.1 시행)

○ 코스닥법인의 1사당 평균자본금 및 평균주식수는 각각 상장 법인의 25.2%, 35.4%수준인 반면 주식분산비율은 오히려 낮음

○ 주식분산비율이 확대되면 주주수와 유통주식수가 많아지게 되므로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음

현 행	개 선
- 소액주주수 100명이상으로서 . 발행주식총수의 "20%이상"(또는) . "10%이상으로서 200만주 이상"	- 소액주주수 500명이상으로서 . 발행주식총수의 "30%이상"(또는) . "10%이상으로서 500만주 이상"

* 거래소상장시 : 소액주주수 1,000명이상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"30%이상" (또는) "10%이상으로서 1,000만주 이상"

□ 창투자등 벤처금융사 및 코스닥등록 대행기관인 증권회사의 역할 및 Due Diligence강화

- 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금융사는 등록후 6개월간 당해 벤처 법인주식의 10%이상을 의무보유
- 증권회사의 경우 등록단계에서 등록신청사의 재무상태, 영업 관계등 기업전반에 걸쳐 점검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“종합진 단표”를 작성하여 점검의무화
 - . 종합진단표의 표준모델은 증권업협회에서 마련

□ 기 타

- 감사보고서는 현재 특정일을 기준으로 감사한 감사보고서도 허용하나 정기주총에서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만 허용
- “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”에 대하여 등록신청일전 6월간 지분변동을 제한
 - *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“1%이상 주주에 대하여 신청일전 1년간 지분 변동을 제한”하여 상장전 특수관계인에게 제3자배정증자를 하여 부당한 자본이득을 취득하는 사례 방지

《 시행시기 》 : 2000.4.1

- 현재 등록준비중인 기업을 감안하여 일정 유예기간 부여

나. 등록심사기능 강화

- 코스닥업무를 전담하는 **상근위원제(1인)**를 도입
 - **코스닥위원회의 추천**을 받아 증권업협회 회원총회에서 선임
 - **상근위원**이 증권업협회의 실무담당부서를 직접 지휘
- 위원회 구성의 **전문성.공정성 제고**
 - 업계대표를 대폭 축소하고 기관투자자 대표등을 참여시키며, 벤처기술전문가, 회계사등 전문가의 비중을 확대

<위원회 구성 개편안>

현 행(총 9인)	개 정(총 11인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계등 전문가(3인) . 연구소, 교수, 법률전문가 - 협회 임원 1인 -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원 1인 - 벤처기업협회 임원 1인 - 증권사 임원 2인 - 코스닥증권사 임원 1인 - <신설> - <신설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계등 전문가(5인) : 회계전문가, 벤처기술전문가 포함 - 협회 임원 1인 -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원 1인 - 코스닥등록 벤처기업 대표 1인 * 코스닥증권사.벤처협회 공동 추천 - <제외> - 코스닥증권사 임원 1인 - 기관투자자 대표 1인 - 상근위원 1인

- 등록담당 실무인력도 **전문인력을 특채**하는 등 보강
 - 현행 6명 → 20명수준

《 시행시기 》 : 2000.1중

2. 코스닥기업 관리 및 퇴출제도 개선

□ 투자유의종목을 그 성격에 따라 “투자유의종목”과 “관리종목”으로 구분하여 관리

○ 현재 투자유의종목중 재무구조가 부실화된 기업은 “관리종목”으로 별도공시하여 투자자가 쉽게 식별토록 함

→ 등록취소요건에 해당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취소

< 개 선 방 안 >

투자유의종목	관리종목	등록취소
- 부도 -----	→ 부도	- 부도(1년내 미해소)
- 영업양도 피흡수합병 -----	→ 영업양도 피흡수합병	- 영업양도 피흡수합병
- 주식거래부진		- 주식거래부진(6월이상)
- 주식분산기준 미달		- 주식분산기준 미달(1년이상)
- 감사의견이 부적정.의견거절		- 감사의견이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(2회)
- 자본전액잠식 -----	→ 자본전액잠식	- 자본전액잠식(1년이상)
- 영업정지 -----	→ 영업정지	- 영업정지(1년이상)
- 불성실 공시(연 2회이상)		- 불성실 공시
- 사업보고서등 미제출		- 사업보고서등 미제출(2회)
- 법정관리 또는 회의 -----	→ 법정관리 또는 회의	- 법정관리 또는 회의

* 99.12 현재 투자유의종목 105개사→투자유의종목 57개사, 관리종목 48개사

□ 불성실공시기업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

- 연 2회(현행 3회)이상이면 투자유의종목에 편입

□ 현재 퇴출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은 조기정리 (내년 상반기중)

* 내년 상반기중 주식장외시장(OTC BB)이 개설될 예정이므로,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되더라도 보유주식의 처분은 가능

□ 비등록된 대형 법인이 등록된 코스닥법인과 합병하여 우회적으로 등록하는 사례 방지

* 거래소 상장법인의 경우 변칙상장등을 막기 위해 상장법인보다 규모가

큰 비상장법인과 합병할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상장요건을 충족
토록 하고 있음

□ 총자산 2조원이상 대형 코스닥법인에 대해서도 **대형 상장법
인과 동일한 기업지배구조 기준 적용**

* 기업지배구조 : 사외이사선임.감사위원회 설치 등

《 시행시기 》 : 2000.1중

□ 다만 관리기준 강화는 2000.4.1, 지배구조개선은 2001년부터 실시

3. 불공정거래 방지기능의 강화

□ 공시제도 강화 : 99.12증권거래법 개정(2000.4.1시행)

- 즉시 공시해야하는 경영변동상황(수시공시사항)의 범위를 확대하여 **거래소시장 수준의 공시제도 운용**
- 수시공시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 **과징금(최고 5억원) 부과제도를 통해 엄격히 제재**

□ **주가감시 종합전산시스템 조기구축 (추진중)**

- 99. 11 : 개발업체 선정.착수(한국전자통신연구원 : ETRI)
 - 총 소요비용 60억원은 증권업협회 예산에 반영
- **2000년중 가동**
 - * 주가감시 종합전산시스템 : 주가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news, rumor, 공시자료 등을 종합.연계하여 주가를 분석.감시하고 이상매매시 자동적으로 적출하는 시스템

□ **불공정거래행위 단속 강화 (즉시 시행)**

-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높은 코스닥주식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및 증권업협회의 조사인력 우선 투입

□ **코스닥 등록시 공모가격 산정방식 합리화 (2000.1중 시행)**

- 코스닥등록시 공모가격이 기업실질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**가격산정방식모델을 마련(금감위)**
 - . 예시 : 수요예측시 상위 10%에 속하는 제시가격을 공모가액결정시 제외

□ **증권업협회의 주가감시 전문인력 보강 : 12명→40명(2000.1중 시행)**

- * 증권거래소 주가감시인력 : 65명

4. 전산시스템등 시장 Infra의 확충

- 다음의 계획하에 전산처리용량 **확충** 및 전산시스템 **개선**

추진일정	추진내용
99.12	-전산처리용량 확대(일일 80만건)
2000.5	-전산처리용량 확대(일일 400만건)
	-주문접수시스템과 매매체결시스템 분리
2000.6 ~2,000.12	-매매일시정지제도(circuit breakers) 프로그램 등 개발.시행 (증권전산 코스닥증권사 공동추진)
2,001중	-전산처리용량 확대 (일일 1,000만건)

- 전산시스템 확충등 Infra구축재원 조달을 위해 코스닥증권 증자 추진 : 210억원 → **1000억원수준** (2000년 말까지)
 - 우선 금년 순이익(약 600억원수준)을 전액 자본전입
 - 선진거래기법.전산시스템 도입을 위해 코스닥증권사에 대한 **외자참여방안도 검토**

5. 코스닥시장 운영체제 개선

- 증권업협회(코스닥위원회)와 코스닥증권사간 **업무구분을 명확히 함**(2000.1중 시행)

- 양 기관이 동일업무를 함께 나누어 담당하고 있는 등록·공시업무를
 - 「등록업무」는 시장조성의 기본제도이므로 **증권업협회(코스닥위원회)**가 담당
 - 「공시업무」는 시장운영과 관련되므로 **코스닥증권사**가 담당
- 기타 시장관련업무는 시장과 보다 밀접한 코스닥증권사가 담당 하되, 「**불공정거래 감시업무**」는 회원인 증권사에 대한 검사 및 조치와 관련되므로 자율규제기관인 **증권업협회가 담당**

구 분	증권업협회(코스닥위원회)	코스닥증권사
등록업무	- 등록심사 - 등록승인 및 등록취소	- 등록기업 유치 ← - 등록신청 접수
공시업무	- 정기공시, 특수공시 →	- 수시공시, 조회공시
규정업무	- 시장운영규정 제개정	
매매중개 및 시장운영	- 불공정거래 감시업무 · 주가감시, 매매심리 · 회원감리 · 불성실공시 조치 - 투자유의종목 지정 → - 소속부 지정 →	- 매매중개 및 통보 - 권리락 등 시장조치 - 매매정지 및 해제

【참고】

□ 코스닥시장의 등록요건

구 분	벤처기업	일 반 기 업		
		선택1	선택2	선택3
설립경과연수	-	3년	-	-
납입자본금	-	5억원	-	-
자기자본	-	-	100억원	1,000억원
자산총계	-	-	500억원	-
주식분산	20%	20%	20%	20%
경영성과	-	경상이익 있을 것	-	-
자본상태	-	자본잠식 없을 것	좌 동	자본금의 50% 미만 잠식
부채비율	-	동업종 1.5배 미만	동업종 평균미만	400% 미만
감사의견	적정 또는 한정	좌 동	좌 동	좌 동

□ NASDAQ시장 상장요건

요 건	Nasdaq National Market			Smallcap
	선택1	선택2	선택3	
순자산 시가총액	600만불 -	1,800만불 -	- 7,500만불 or (총자산 또는 총매출)	(400만불 or 5,000만불 or
순이익	100만불	-	-	75만불)
유통주식수	110만주	110만주	110만주	100만주
설립년수	-	2년	-	1년
시장가치	800만불	1,800만불	2,000만불	500만불
최소주가	5불	5불	5불	4불
주주수	400명	400명	400명	300명
마켓메이커수	3사	3사	3사	3사
질적요건	적용	적용	적용	적용

* smallcap은 소규모기업을 말함

* 질적요건 : 사외이사수 최소 2인 이상

감사위원회 설치 및 위원의 대다수가 사외이사이어야 함